소식 1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-35호
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 이유

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 · 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식품 중 몰리네이트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 · 규격 신설[안 제5. 11. 11-1, 제8. 2.1.5.4]

1)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
2)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
3) 폐질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

나. 식품원료의 사용기준 개정[안 별표 2]

1) 건강기능식품 섭취량 변경에 따라 동일한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사용기준 개정 필요
2)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원료 사용기준을 '5% 이하 사용, 1일 섭취량 6g을 초과할 수 없다'에서 '2% 이하 사용, 1일 섭취량 2.5g을 초과할 수 없다'로 개정
3)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

다.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[안 별표 4 중 (81) 몰리네이트, (149) 실라플루오펜, (176) 에디펜포스, (407) 플루페나셋]

1)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
2) 몰리네이트 등 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
3)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행정예고 : 공고 제2023-605호(2023. 12. 26. ~ 2024. 2. 26.)
2) 식품 ·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
   가)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: 24.3.19.
   나)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:

24.4.11.

3) 규제심사

가)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: 규제심사 대상 제2023-5717호(2023. 12. 8.)

나) 식약처 자체규제심사: 원안의결(2024. 4. 16. ~ 4. 17.)

다) 법제처 심사: 법령위반 · 위임일탈 해당없음 (2024. 5. 28.)

라)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: 비중요 규제(제946회, 2024. 6. 24. ~ 6. 30.)

소식 2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-41호

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이유

식품의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내용량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, 소비자가 무당,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 오인 ·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하며, 주류에 표시하는 열량이 더 잘 보이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한편,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새로 추가한 영양성분의 허용오차범위를 마련하고자 함. 또한,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서 정하는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,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기준을 완화하는 등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. 아울러,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 · 가공한 제품의 경우를 명확히하고,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를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과 같이 현행화하고,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표시 명확화(안 Ⅱ. 1. 서.)

1)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'영 · 유아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'에 대한 기준 · 규격은 있으나, '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'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표시기준 부재

2) 소비자 오인 · 혼동 방지를 위해 일반식품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경우 '영 · 유아용 식품' 임을 표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

나.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기준 완화[안 Ⅲ. 1. 사. 2)]

1) 혼합식용유의 제품명에 원재료명을 사용할 수 없어 제품명 선정이 어렵고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저해로 규제개선 필요

2) 혼합식용유의 제품명에 원재료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소비자 오인 · 혼동 방지 및 식용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명에 가장 많이 사용한 원재료명을 사용하고 사용된 모든 식용유지 함량 정보를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 명확화

다.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 · 가공하는 경우의 명확화(안 Ⅲ. 1. 카., 더., 저.)

1) 간편조리세트 등에 원재료가 냉동제품인 것을 '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 · 가공한 제품의 경우'에 대한 영업자의 다양한 해석으로 혼선 발생

2)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과 동일하게 단순 해동 또는 해동 후 분할포장하여 냉장제품에 구성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내용을 명확화하여 영업자 혼선 방지

라.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[안 Ⅲ. 1. 거. 3)]

1) 주류의 열량이 잘 보이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

2) 주류의 열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열량을 크고 굵게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

마. 천연색소류 제제의 색가 표시 대상 명확화(안 Ⅲ. 2. 가.)

1) 천연색소류 중「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」에서 색가의 함량 기준이 없는 경우 색가 표시 불가

2) 천연색소류 제제 중「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」에서 색가에 대한 함량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색가를 표시하도록 표시 대상 명확화

바.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신설[안『별지 1』1.마. 8)]

1)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,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 부재로 소비자가 소폭의 내용량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 제기

2)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및 제품 선택권 보장

사.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제품 정보제공 확대[안『별지 1』1. 아. 3)]

1) 소비자가 감미료를 사용하고 무당, 무가당 등으로 강조한 제품에 대하여 덜 달거나 열량을 낮춘 것으로 오인 · 혼동

2) 무당,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'감미료'가 함유되어 있음과 '열량에 대한 정보'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알권리 및 제품선택권 보장

아. 필수지방산의 허용오차 범위 마련[안『별지 1』1. 아. 4)]

1) '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'에 따라 필수지방산 3종(리놀레산, 알파-리놀렌산, EPA+DHA)의 1일 기준치가 마련되어 표시대상 영양성분으로 추가

2) 필수지방산 3종(리놀레산, 알파-리놀렌산, EPA+DHA)에 대한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 간의 허용오차범위 마련

3) 원재료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영양성분 함량 차이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영업자 부담 완화

자.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,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의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(안 Ⅲ. 1. 더.,『별지 1』1.아., [표 6])

1)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천연케이싱의 명칭 정비 및 자구수정

2)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첨가물의 주용도 현행화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식품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행정예고

가) 공고 제2023-614호(23. 12. 28. ~ 24. 2. 26.)

나) 공고 제2024-93호(24. 2. 20. ~ 24. 4. 20.)

2) 규제심사

가) 공고 제2023-614호 관련

(1)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검토: 규제심사 대상(23. 12. 26.)

(2)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 규제심사: 원안의결(24. 4. 25.)

(3) 법제처 심사: 위임범위 일탈 없음(24. 5. 17.)

(4)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: 비중요 규제(24. 6. 17.)

나) 공고 제2024-93호 관련

(1)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검토: 규제심사 대상(24. 2. 5.)

(2)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 규제심사: 원안의결(24. 5. 22.)

(3) 법제처 심사: 위임범위 일탈 없음(24. 6. 26.)

(4)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: 비중요 규제(24. 7. 8.)

소식 3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-43호

「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」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이유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축산물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(안 별표 제2호 나목)

2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1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행정예고 : 공고 제2024-338호(2024. 7. 15. ~ 2024. 8. 5.)

(2)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: 비대상 확인(제2024-3776호, 2024. 7. 9.)